

세무와회계저널
제8권 제2호 2007년 6월 pp.31~55
한국세무학회

세제전문가의 금융소득세제 공평성 인식에 관한 연구

김선구* · 박성배**

<요 약>

금융소득에 대한 기준금액이하의 분리과세제도가 소득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보다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누진세율체계와 이질적 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과세차별을 행하는 수직적 공평성을 고려한 제도로 볼 수 있는가에 이견이 있다. 따라서 분리과세제도는 소득이 높은 집단의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합당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소득불균형을 조장하는 기능과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하에 대한 분리과세제도가 수직적 조세공평성에 부합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세전문가의 인식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세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및 F검증에 의한 분산분석(ANOVA), F검증에 대한 사후검증으로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활용하여,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한 공평성정도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제도는 조세부담상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인식정도 차이는 직업별로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가설을 통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반면, 소득 계층별 집단 간 차이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여야 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인식정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직업별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가설을 통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반면, 소득별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4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는 고소득자의 경우 조세부담능력보다 적게 납부할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인식차이는 직업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가설을 통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반면, 소득별로 집단 간 차이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연구대상자 모두 금융소득의 기준금액이하에 대한 분리과세제도가 조세공평성에 저해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조세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조세의 공평과세의 실현 및 재분배기능 강화를 위해 조세체계의 공평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세체계의 불공평에 대한 불만은 조세저항 및 조세회피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주제어> 금융소득과세제도, 조세공평성, 분리과세, 소득세율체계, 이자·배당소득

* 경원대학교 경상대학 겸임교수, kimg610@hanmail.net, 제1저자

** 경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sbpark@kyungwon.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 2006년 10월

게재확정일 2007년 5월

I. 서 론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체계는 해방이후 수 없는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제개발 초기에 국내저축을 장려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목표 중의 하나였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하여 세제상의 각종 우대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득세의 수평적 공평성이 침해되었다. 더욱이 금융실명제의 실시 전까지 존재하였던 “예·적금에 관한 비밀보장법”에 의하여 예금, 적금은 물론 국채, 공채, 회사채 등 모든 금융자산이 가명이나 차명의 거래가 법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지하경제인 사채(私債)시장의 발전이 금융시장의 교란과 부동산 투기자금 형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지하경제에 대하여 세원포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의 분리과세는 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현행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적 세율구조를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본다면 한계세율이 분리세율보다 높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평균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한계세율이 낮은 계층에 대하여는 평균세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결국 누진구조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이자 및 배당소득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분리과세제도는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의 일차적인 기능은 재정수입의 확보이지만 그것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한다면 바로 국민의 재산권의 침탈과 관련이 되고 납세자의 불만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공평에 대한 불만은 조세저항 및 조세회피를 유발시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납세자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의 욕구 중 공평성에 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이우택 1995) 조세체계에서도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세의 공평성에 관하여는 동일한 경제능력을 소유한 자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과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면 이는 수평적 공평성일 것이고, 소득세법에서 소득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체계는 수직적 공평성을 고려한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커감에 따라 얼마나 누진적으로 세 부담을 늘려야 하는가에는 이견이 있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김예기 2003)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해답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이나 수평적 공평성이 현실적으로 보아 명확히 정의될 수 없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득¹⁾에 대한 기준금액이하의 분리과세가 소득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보다 많

1) 금융소득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된다.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은 비실명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10년 이상)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 조세를 부담하는 누진세율체계와 이질적 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과세차별을 행하는 수직적 공정성을 고려한 제도로 볼 수 있는가에 이견이 있다. 즉, 분리과세제도는 소득이 높은 집단의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합당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소득불균형을 조장하는 기능과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분리과세제도에 대한 과세공평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소득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이하 분리과세²⁾가 수직적 과세공평성에 부합되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설문지는 이자·배당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한 관련지식이 있는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업별, 소득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금융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대행하므로 분리과세와 원천징수 후 이를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조세체계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세 공정성 측면에 대한 인식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교수집단은 과세공평성에 대한 이론적 개념에 의한 조세제도의 타당성 판단이 기대된다. 또한 일반기업체 세무담당 사원은 법인형태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의 이중과세 및 법인과 개인의 과세차이에 따른 현행제도의 타당성 등에 의해 직업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별 인식차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이자·배당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조세전문가로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및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조세제도가 과세공평성에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해 인식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설검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및 F검증에 의한 분산분석(ANOVA), F검증에 대한 사후검증으로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활용하여,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한 공정성 정도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금융소득의 소득세 체계에 대한 공정성 정도와 공정성 제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이론적 배경과 금융소득과세 제도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간략히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설계를 위하여 가설설정과 표본의 선정, 조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현황과 실증검증결과를 요약한다.

받는 금융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특정금융소득 ②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③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중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금융소득을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원천징수된 것에 한함)이라 한다.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과세한다.

2) 무조건 분리과세 요건(2008. 12. 31까지)

- ①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 ②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③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단,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를 보유한 경우는 비과세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

1. 이론적 배경

가. 조세의 공평성 개념

모든 납세자가 조세부담의 공평성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하나는 ‘편익원칙’으로 각 납세자가 정부서비스로부터 받은 편익에 의해 공평한 조세부담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원칙’으로 각 납세자가 가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접근법이다.

조세공평성에는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과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으로 구분된다. 수평적 공평성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동일한 세금부담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한층 더 일반화시켜 표현한다면 동일한 담세력의 사람이라면 세금은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평적 공평성에 대하여 이만우(1993)는 유사한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납세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변용환(1990)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납세자에게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수직적 공평성은 더 큰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진권·나성린(1993)은 각 계층이 가진 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측정하는 것이다. 박춘래·장호영(1994)은 동일한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각기 다른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명제에서 논의되고 있다. 즉, 수직적 공평성은 동일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납세자들에게 사회정의 개념에 부합하게 적절한 차별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얼마나 누진적으로 세금부담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다(고철수, 2001)

나.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의하여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게 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종합과세의 원활한 시행 및 사전 행정 준비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시기인 1994년에 입법조치를 완료하였다. 이후 종합과세에 대해 일부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당초의 채권 등에 대한 과세 방식이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유기간별 과세방식으로 보완하고,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저축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등의 개정이 반영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부부합산 4천만원 이상을 종합과세하도록 시행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 귀속분부터 무기한 유보하였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소득간·계층간 세부담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 실시 되었고, 2002년 8월 29일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위헌판결로 개인별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지하경제를 차단하고 공평과세를 통하여 조세정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지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기준초과금액³⁾에 한하여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함으로써 한정되어 있다.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계산에 있어서 비교과세는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각각 다르게 계산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득 과세 방법은 첫째, 금융소득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초과분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⁴⁾보다 같거나 큰 경우, ①(4천만원×14%)+(다른 종합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4천만원 초과분-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②(이자 및 배당소득×14%)+(다른 종합소득-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의 두 가지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둘째,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4천만원 초과분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보다 작은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이자 및 배당소득-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14%+(다른 종합소득+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②(이자 및 배당소득×14%)+(다른 종합소득-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의 두 가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셋째,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①(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14%)+(다른 종합소득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②(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14%+(다른 종합소득-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의 두 가지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넷째, 4천만원을 초과하지도 않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도 없는 경우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금액의 이중과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배당소득에 비교과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을 공제하고, gross-up⁵⁾ 대상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15%를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사업형태를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고 할 때 법인형태로 사업한다면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의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다. 또한 당해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된다면 주주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져서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할 경우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와 개인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어 개인형태로 사업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gross-up 제도는 배당소득이

3) 금융소득금액에서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초과금액이라고 함.

4)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천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으로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을 말하며, 이에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있다.

5) gross-up 제도란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 당해연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15%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gross-up)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동 gross-up 금액을 공제(배당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gross-up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총수입금액에 gross-up 금액을 가산한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일 것 ②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중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일 것 ③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일 것

종합과세될 때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⁶⁾라 할 수 있다.

다. 외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1) 미국

미국은 이자·배당소득을 모두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과세하고 있다. 다만, 예금주가 납세자번호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20%를 원천징수한다. 종합소득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개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가 없고, 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수취배당의 80%를 익금불산입한다. 비과세 금융상품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소액 또는 공익목적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은 이자소득에 대해 23.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율은 20%, 25%, 40%의 3단계 과세구조를 갖고 있으며,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법인세가산조정제(Imputation System⁷⁾)을 도입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은 연말정산 때 납세자가 금융소득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금융기관의 경우도 이자지급과 원천징수 내용을 수시로 세무당국에 신고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세원관리를 바탕으로 독일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

(4) 일본

일본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고 있으며, 일정한도 내에서는 65세 이상, 모자가정, 신체장애자의 저축 및 근로자저축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원천분리과세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1천만엔 미만은 10%, 초과분은 5% 공제한다.

6) 현재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및 이중과세 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 주	과세방법		이중과세의 조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	종합과세	과세표준에 배당소득총수입 금액의 15%를 gross-up함	과세표준에 산입한 gross-up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해당사항 없음
법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	배당소득금액을 익금으로 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7)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배당액뿐 아니라 배당에 준하는 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의 다른 소득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산정하고 가산된 법인세액분을 세액 공제하는 방식

2. 선행연구의 검토

조세의 공정성은 경제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많은 이론과 실증적 연구가 있다. 조세공평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반적으로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과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으로 나뉘어 연구되어왔다.

가. 국내의 조세공평성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현진권·나성린(1994)은 소득세제 가지는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Gini 계수, Atkinson 지수, Berliant와 Strauss(B-S) 지수 모두를 사용하여 계수들간의 일치성을 비교하고, 도시가구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계층을 십분위수로 분류한 후 평균부담률(전체세액/전체소득)을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세 평균부담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소득세 평균부담률이 높아진다. 또한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자영업자에 비해 누진적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소득분배 향상효과가 높게 나타나며, 소득세제의 세부담 형평성에서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임용주·김정완(1996)은 소득세율 변화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계층별 부담률의 변화인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1990년의 개정 소득세법에서 세율구조단계의 축소가 근로소득세의 공평성을 향상시켰는지를 Suits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소득크기에 따라 십분위수로 분류하고 평균세율(세액/과세표준)과 실효세율(세액/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세율 및 실효세율의 Suits 지수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부담이 높아졌다. 1990년의 단일시점 분석결과는 근로자의 평균세율과 실효세율이 전체 소득계층에 걸쳐 전반적으로 낮지만 저소득층은 큰 폭으로 낮고, 고소득층은 적은 폭으로 낮다. 1991년의 단일시점 분석결과 근로소득자 전체와 봉급생활자의 평균세율과 실효세율이 모든 소득계층에 낮게 나타나며 저소득층일수록 더 낮고 고소득층일수록 낮은 폭이 좁다. 따라서 소득계층간의 수직적 공평성과 전체 근로자간의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었다.

조한석(1998)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체제하에서 소득원천이 다를지라도 담세력이 유사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유효세율의 조세부담률 차이, 수평적 공평성 여부 및 세법개정들이 수평적 공평성을 향상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소득자의 조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세력기준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간에는 수평적 불공평성이 존재하고, 세법개정에 의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더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원(2001)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중 단일소득만 있는 실제신고자료를 표본으로 담세력이 유사한 납세자 집단들의 수평적 공평성과 담세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수직적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1995년의 소득세 신고 및 결정방법의 변경(부과과세제에서 신고납부제로)과 1996년의 소득세 세율체계의 단순화라는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1994-1996년의 소득금액을 집단분류기준으

로 하여 열개의 집단으로 분류한후, 수평적 공평성 분석은 변동계수(coefficient variation)와 잔차변동계수(coefficient of residual variation)를, 수직적 공평성 분석은 Suits 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수평적 공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995년의 신고납부제도로의 변화는 공평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1996년의 세율 단계수의 축소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박춘래·김종원(2003)은 소득세 자료 중 종합소득세를 기초로 소득세제에 대한 기간별 공평성에 대해 연도별로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변동계수와 잔차의 변동계수를 사용하고, 수직적 공평성 분석은 Suits 지수와 Kakwani 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3 개년을 기준으로 1997년도는 1992년에 비해 수평적 공평성은 증가한 반면 수직적 공평성은 감소하였고, 2001년도는 1997년에 비해 수평적 공평성은 감소한 반면 수직적 공평성은 증가하였다. 이는 1997년의 수평적 공평성 증가는 조세감면의 축소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수평적 공평성 증대를 위한 일련의 세제개혁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2001년의 수평적 공평성 감소는 외환위기로 인한 납세자들의 세부담 격차를 확대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안종석(2005)은 조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는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소득을 얻는 납세자는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확보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수직적 형평성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분배의 형평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한계세율을 달리 책정하는 누진세율체계가 중요한 정책수단이 된다. 조세체계의 누진성이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직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세의 왜곡효과 최소화는 이율배반적 관계(trade-off)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 외국의 조세공평성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Grasso · Frischmann(1992) 개별 납세자의 신고서에 의해 종합소득(EI)의 크기에 따라 납세자를 십분위수로 분류하여, 집단별로 수평적 공평성 분석을 위하여 변동계수와 회귀분석으로부터 잔차의 변동계수를 계산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잔차의 변동계수는 함수적으로 각 집단마다 동일한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에 대한 임의적 집단문제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소득의 연속함수로서 동일한 유효세율의 무한한 집단 수를 창출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소득계층내 역진성에 의해 야기되는 수평적 불공평성의 왜곡을 제거시키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Anderson · Hill · Murphy(1995)는 실험실 시장연구에 의해 17개의 투자자 집단의 세법변경에 따른 수평적 공평성 증감여부를 내재적 조세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수평적 공평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제 총조세에 대한 변동계수는 명시적 조세에 대한 변동계수보다 작았으며, 명시적 조세만을 분석한 경우 조세부담자간의 수평적 공평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내재적 조세를 포함한 분석에서는 조세부담자간의 수평적 공정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 소 있다. 또한 내재적 조세를 포함하면 수평적 불공평성이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Setharaman and Iyer(1995)는 일곱 가지의 대체적인 누진성 측정지수들의 특징, 속성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다음, 이 지수들을 이용하여 1976-1986 기간 동안 자녀 및 부양가족공제의 누진성에 관하여 서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그 결과 EDE⁸⁾와 CEP⁹⁾ 지수들은 자녀양육비공제가 소득불평등에 거의 영향을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2년의 비례적 공제제도에서 채감적 공제제도로의 자녀양육비 공제에 대한 세법 변경은 이러한 지수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누진성 지수들은 그와 관련된 곡선들이 상호교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누진성 지수들의 수치들을 누진적, 역진적 요소들로 분해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에서 1982년의 세법변경 결과로 인한 새로운 자녀양육비공제제도가 구 공제제도보다 더 누진적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Suits 지수만 독단적으로 사용했다라면 자녀양육비공제는 매우 누진적이라는 단순한 결과만 제시될 것이므로 Suits 지수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조세시스템의 누진성 효과에 관한 추론을 불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행의 조세누진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누진성 지수로 Suits 지수를 지나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비록 Suits 지수가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조세의 누진성이 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조세의 누진성의 주된 목표가 소득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III.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1. 연구가설의 설정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실지명의를 금융거래 기반으로 공평과세를 통하여 조세정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소득, 계층 간 세부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 되었다. 도입 후 부부합산 4천만원 이상의 종합과세로 개정하고, 외환위기 이후 무기한 유보되었으며, 위헌 판결로 부부합산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전환되어 시행되었다. 소득세제의 공평과세를 통하여 조세정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지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기준초과금액에 한정하여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였다. 이는 금융소

8) EDE 수준(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level of income)은 수직적 공정성의 척도를 이용한 지수로 “균등분배대 등소득” 또는 “동등분포소득”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소득의 EDE 수준을 이용하는 지수로는 Atkinson(1970)의 지수와 이를 이용한 Kiefer(1984)와 Blackorby and Donaldson(1984)의 지수가 있다.

9) CEP 지수는 소득이나 조세의 소득계층별 집중도를 나타내는 로렌즈 곡선(Lorenz curve)의 측정지수로 Musgrave and Thin(1948)에 의해 이용되었다. 로렌즈 곡선의 측정지수는 Khetan and Poddar(1976)의 KP1, KP2 지수, Suits(1977)의 S 지수, Kakwani(1977)의 K지수 등이 있다.

득을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준금액 이하를 각각 다르게 과세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약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기준금액에 의한 금융소득의 과세제도가 담세력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보다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가에 대한 수직적 공평성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만우(1993)는 조세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납세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질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그 환경의 차이점이 고려된 납세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행의 금융소득에 대한 기준금액이하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는 이질적 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과세차별을 행하는 수직적 공평성이 저해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득의 이자·배당소득은 기준금액이하에 대해서 14%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현행의 기준금액이하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의 14% 분리과세제도와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8%, 4,000만원 이하 17% 간의 소득발생원천의 차이점은 있지만,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수평적 공평성과 담세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합리적인 과세차별을 행하는 수직적 공평성에 역기능을 한다. 이는 기준금액 이하에 대한 분리과세에 의해 실질과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합당한 방법으로 과세공평성에 저해되며, 이는 불가피하게 소득불균형을 일순 조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기준금액 이하의 14% 세율은 저소득계층의 종합소득 최저세율 8%에 비해 높다.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계층의 금융소득은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에 비해 낮을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클 것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기준금액까지의 종합소득세율 17%에 비해 금융소득 14%는 조세부담을 낮추는 결과가 나타난다. 즉, 금융소득의 과세제도가 담세력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보다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가에 대한 과세공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제도가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원활히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제도에 대한 소득세제의 공평성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의 인식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는 소득세제의 불공평에 대하여 세무전문가 집단 간에 인식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1-1 : 4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제도는 소득세제의 불공평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집단 직업별로 인식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1-2 : 4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제도는 소득세제의 불공평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집단 소득 계층별로 인식차이가 없을 것이다.

현행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준금액 이하를 각각 다르게 과세함으로써, 조세공평성의 불균형을 낳게 된다. 기준금액이하에 대하여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과세제도는 동일한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각기 다른 금액을 부담하는 수직적 공평성(박춘래·장호영, 1994)에 이견이 있다. 이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납세자들에

게 사회정의 개념에 부합되게 적절한 차별을 두는 공평과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의 기준금액이하의 분리과세제도가 담세력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비해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하는 과세공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세무전문가들의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 이자·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대한 공정성 정도에 대하여 세무전문가 집단 간에는 인식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2-1 :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집단 직업별로 인식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2-2 :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집단 소득 계층별로 인식차이가 없을 것이다.

현행의 금융소득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기준초과금액에 한하여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도록 한정되어 있으며, 기준초과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도입 이후 일부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부부합산과세가 개인별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의 개선에 의해 금융소득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높은 집단은 개인별 과세에 의해, 같은 금융소득이 발생하여도 부담세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반면, 소득이 낮은 집단의 금융소득에 대한 부담세액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더 큰 부담 능력을 보유한 납세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같은 결과는 소득이 높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비해 분리과세에 의해 조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분리과세제도에 의해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이 조세부담능력 보다 적게 부담할 것에 대한 세무전문가들의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제도는 고소득자의 조세부담능력보다 적게 납부할 허점에 대하여 세무전문가 집단 간에는 인식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3-1 :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제도는 고소득자의 조세부담능력보다 적게 납부할 허점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집단 직업별로 인식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3-2 :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제도는 고소득자의 조세부담능력보다 적게 납부할 허점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집단 소득 계층별로 인식차이가 없을 것이다.

2. 표본의 선정

현행 금융소득세제인 이자 및 배당소득의 공평성 정도에 관한 세무전문가집단의 인식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세관련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세무학 전공교수, 기업체 세무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을 조세관련 전문가로 선정한 기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분리과세 제도에 대한 과세공평성 측면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금융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조세관련 전문가 3,000명에게 E-메일로 설문지를 송부하여 225개의 회답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 완전한 답이 되지 못하는 결측치 21개를 제외하고 204개의 표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인구 통계적 분류는 <표 1>과 같다.

<표 1>는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성별 분류는 남자 175명 85.78%, 여자 29명 14.22%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별 분류는 3천만원 이하 24명 11.76%, 3천만원이상-5천만원이하 59명 28.92%, 5천만원이상-1억원 이하 95명 46.57%, 1억원 이상 26명 12.75%이다. 직업별 분류는 공인회계사 129명 63.24%, 세무사 37명 18.14%, 회사 임원 및 사원 21명 10.29%, 기타 17명 8.33%가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적 분류

구 분		빈 도	비율(%)
성 별	남 자	175	85.78
	여 자	29	14.22
	계	204	100.00
소득계층별	3천만원 이하	24	11.76
	3천만원이상-5천만원이하	59	28.92
	5천만원이상-1억원 이하	95	46.57
	1억원 이상	26	12.75
	계	204	100.00
직 업 별	공인회계사	129	63.24
	세무사	37	18.14
	회사 임원 및 사원	21	10.29
	기 타	17	8.33
	계	204	100.00

3. 조사연구방법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로는 실험실 실험(laboratory experiment), 현장 실험(field experiment), 우편실험(post experiment) 등이 있다. 그러나 실험실 연구의 경우 실제 납세자를 실험절차에 따라 통제하면서 연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행동연구에서 중요한 지침중의 하나인 현실감을 강조하기 위하여 현실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변수들을 사용한 설문지를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하고 회답을 받는 형식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금융소득인 이자 및 배당소득의 공정성 정도에 대한 세무전문가집단의 인식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의 공정성 정도에 관한 설문지는 리커트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¹⁰⁾. 설문지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및 F검증에 의한 분산분석(ANOVA)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F검증에 대한 사후검증으로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활용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설문지에 의해 응답한 표본의 기술통계량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의하면, 현재의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불공평성에 대하여, 세무전문가 집단의 인식정도는 “그렇다” 67명 32.8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렇지않다” 55명 26.96%, “어느정도 그렇다” 22.05%, “전적으로 그렇다” 13.23%, “전혀 그렇지않다” 4.90% 순으로 나타났다. 표본전체의 68.12%가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으로 현재의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제도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전체의 31.88%가 현재의 원천징수제도에 대하여 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것에 대한 세무전문가 집단의 인식정도는 “그렇다” 62명 30.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지않다” 54명 26.47%, “그렇지않다” 38명 18.62%, “전적으로 그렇다” 31명 15.20%, “전혀 그렇지않다” 19명 9.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전체의 64.22%가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으로 현재의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전체의 35.78%가 현

10) 설문지는 리커트 5점 척도에 따라 전적으로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어느정도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않다 “1점”을 부여하여 작성되었다.

재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조세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의해 고소득자는 조세 부담능력보다 적게 부담할 것에 대한 세무전문가 집단의 인식정도는 “그렇다” 86명 42.1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느정도그렇다” 46명 22.54%, “전적으로 그렇다” 38명 18.62%, “그렇지않다” 29명 14.24%, “전혀 그렇지않다” 5명 2.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전체의 83.31%가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으로 현재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의하여 고소득자는 조세 부담능력보다 적게 부담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분리과세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기술통계량 분석

구 분		빈 도 수	비율(%)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것의 불공평 인식정도 차이	전적으로 그렇다	27	13.23
	그렇다	67	32.84
	어느정도 그렇다	45	22.05
	그렇지않다	55	26.96
	전혀 그렇지않다	10	4.92
	계	204	100.00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것에 대한 공평성 인식정도 차이	전적으로 그렇다	31	15.20
	그렇다	62	30.40
	어느정도 그렇다	38	18.62
	그렇지않다	54	26.47
	전혀그렇지않다	19	9.31
	계	204	100.00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의해 고소득자의 조세 부담은 부담능력보다 적게 부담할 것에 대한 인식정도 차이	전적으로 그렇다	38	18.62
	그렇다	86	42.15
	어느정도 그렇다	46	22.54
	그렇지않다	29	14.24
	전혀그렇지않다	5	2.45
	계	204	100.00

2. 가설검증

가. 현행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공정성 정도의 인식차이 분석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인 분리과세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직업별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직업별 인식차이 분석 결과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F	P	Duncan검증
공인회계사	129	3.09	1.121	3.137	0.027	A
세무사	37	3.21	1.158			A
회사임원 및 사원	21	3.85	0.910			B
기타	17	3.47	1.179			A B
합계	204	3.22	1.131			

주) 평균값은 전적으로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어느정도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부여하여 계산된 수치이다.

<표 3>를 보면, 연구대상자 각 직업별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제도인 분리과세제도에 대해 표본전체의 평균이 3.22로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인식정도는 회사 임원 및 사원 3.85, 기타 3.47, 세무사 3.21, 공인회계사 3.09로 모두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자 집단 모두 현재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에 대하여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 직업별로 집단 간 현재의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제도에 대한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 F값이 3.137, 유의확률 0.027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5%에서 가설 1-1의 “직업별로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에 대하여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데 차이가 없을 것이다”를 기각한다. 따라서 세무전문가 집단의 직업별로 현재의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에 의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회사 임원 및 사원과 기타 집단이 공인회계사, 세무사 집단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회사 임원 및 사원과 기타 집단이 공인회계사, 세무사 집단에 비해 현재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에 대하여 더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술통계량 분석에서 표본전체의 68.12%가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와 연구대상자의 직업별 인식차이 분석 결과에서 전체 평균이 3.22로 “어느정도 그렇다”의 결과

와 같이 현재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인 분리과세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별 인지도는 회사 임원 및 사원과 기타 집단이 현재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인 분리과세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소득 계층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소득 계층별 인식차이 분석 결과

소 득	N	평 균	표 준 편 차	F	P
3천만원미만	24	3.08	1.213	1.688	0.171
3천만원~5천만원미만	59	3.00	1.067		
5천만원~1억원미만	95	3.32	1.153		
1억원이상	26	3.50	1.068		
합 계	204	3.22	1.131		

주) 평균값은 <표 3>와 같이 계산된 수치임.

<표 4>를 보면, 연구대상자 소득 계층별 현재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에 대해 표본전체의 평균이 3.22로 “어느정도 그렇다” 정도로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 인식정도는 1억원이상 집단이 3.50, 5천만원~1억원미만 3.32, 3천만원미만 3.08, 3천만원~5천만원미만 3.00의 순으로 모두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소득 계층별 모두 현재의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소득 계층별 현재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에 대하여 각 집단 간 인식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결과 F값이 1.688, 유의확률 0.171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1-2의 “소득 계층별로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에 대하여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데 차이가 없을 것이다”를 지지하므로, 소득 계층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가 없다고 분석된다. 이에 따라 가설 1-2는 지지된다.

이 같은 결과는 기술통계량 분석에서 표본전체의 68.12%가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와 연구대상자의 소득 계층별 인식차이 분석 결과에서 전체 평균이 3.22로 “어느정도 그렇다”의 결과와 같이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세무전문가 집단은 현행 현재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인 분리과세제도가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자·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공평한가에 대한 세무전문가집단의 직업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직업별 인식차이 분석 결과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F	P	Duncan검증
공인회계사	129	3.02	1.221	4.046	0.008	A B
세무사	37	3.59	1.235			B C
회사임원 및 사원	21	2.76	1.044			A
기타	17	3.70	1.263			C
합계	204	3.15	1.238			

주) 평균값은 <표 3>와 같이 계산된 수치임.

<표 5>를 보면, 연구대상자의 직업별로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공평한가에 대한 인식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이 3.15로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 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인식정도는 기타 3.70, 세무사 3.59, 공인회계사 3.02로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 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 임원 및 사원은 2.76으로 “그렇지 않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는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행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회사 임원 및 사원은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에서는 연구대상자 직업별로 집단 간 현행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공평한가에 대한 인식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 F값이 4.046, 유의확률 0.008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1%에서 가설 2-1의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집단 직업별로 인식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를 기각한다. 따라서 세무전문가 집단의 직업별로 현재의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대한 인식도는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세 개의 부집단으로 나누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회사임원 및 사원, 공인회계사이고 두 번째 집단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세 번째 집단은 세무사와 기타이다. 검증결과,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에서는 회사임원 및 사원과 세무사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두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에서는 공인회

계사와 기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 간에는 겹치는 직업이 없으므로 공인회계사와 회사임원 및 사원과 기타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타 집단이 공인회계사와 회사임원 및 사원에 비해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해야 한다고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술통계량 분석에서 표본전체의 64.22%가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와 연구대상자의 직업별 인식차이 분석 결과에서 전체 평균이 3.15로 “어느정도 그렇다”의 결과와 같이 현재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별 인지도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및 기타 집단은 현행의 분리과세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것에 대한 세무전문가집단 소득 계층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연구대상자의 소득 계층별 인식차이 분석 결과

소 득	N	평균	표준편차	F	P
3천만원미만	24	3.20	1.285	1.721	0.164
3천만원~5천만원미만	59	2.86	1.137		
5천만원~1억원미만	95	3.25	1.271		
1억원이상	26	3.42	1.238		
합 계	204	3.15	1.238		

주) 평균값은 <표 3>와 같이 계산된 수치임.

<표 6>를 보면, 연구대상자 소득 계층별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것에 대해 표본전체의 평균이 3.15로 “어느정도 그렇다” 정도로 나타났다. 계층별 인식정도는 1억원이상 집단이 3.42, 5천만원~1억원미만 3.25, 3천만원미만 3.20의 순으로 모두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3천만원~5천만원미만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은 5천만원 이상 집단과 소득수준이 낮은 3천만원 미만 집단에서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현행의 분리과세제도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에서 연구대상자 소득 계층별로 집단 간 현행의 분리과세제도에 비해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가에 대한 인식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2-2의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집단 소득 계층별로

인식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를 지지하므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대한 인식차이가 없다고 분석된다. 이에 따라 가설 2-2는 지지된다.

이 같은 결과는 기술통계량 분석과 연구대상자의 소득 계층별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세무전문가 집단은 현재의 분리과세제도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의한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는 고소득자의 경우 조세부담능력보다 적게 납부할 허점이 있는가에 대한 직업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연구대상자의 직업별 인식차이 분석 결과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F	P	Duncan검증
공인회계사	129	3.42	1.006	4.483	0.005	A
세무사	37	4.08	0.954			B
회사임원 및 사원	21	3.80	0.928			A B
기타	17	3.64	1.115			A B
합계	204	3.60	1.024			

주) 평균값은 <표 3>와 같이 계산된 수치임.

<표 7>를 보면, 연구대상자의 직업별로 현행의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는 고소득자의 경우 조세부담능력보다 적게 납부할 허점이 있는가에 대한 인식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이 3.60로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인식정도는 세무사 4.08로 “그렇다”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 임원 및 사원 3.80, 기타 3.64, 공인회계사 3.42로 모두 “어느정도 그렇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자 직업별 모두 고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제도는 조세부담능력보다 적게 납부할 허점이 있는 과세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직업별로 집단 간 현재의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는 고소득자의 경우 조세부담능력보다 적게 납부할 허점이 있는가에 대한 인식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 F값이 4.483, 유의확률 0.005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1%에서 가설 3-1의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제도는 고소득자의 조세부담능력보다 적게 납부할 허점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집단 직업별로 인식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를 기각한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집단의 직업별로 현재의 분리과세제도에 의해 고소득자의 경우 조세부담능력보다 적게 납부할 허점이 있는가에 대한 인식도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에 의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공인회계사, 기타, 회사임원 및 사원, 두 번째 집단은 기타, 회사임원 및 사원, 세무사이다. 검증결과, 기타 집단과 회사임원 및 사원은 두개의 집단에 겹쳐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세무사가 공인회계사 보다 4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제도는 고소득자의 경우 그들의 조세부담능력 보다 덜 납부할 허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는 고소득자의 경우 조세부담능력보다 적게 납부할 허점이 있는가에 대한 소득 계층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연구대상자의 소득별 인식차이 분석 결과

소 득	N	평 균	표준편차	F	P
3천만원미만	24	3.62	1.013	1.552	0.202
3천만원~5천만원미만	59	3.37	0.981		
5천만원~1억원미만	95	3.73	1.013		
1억원이상	26	3.61	1.134		
합 계	204	3.60	1.024		

주) 평균값은 <표 3>와 같이 계산된 수치임.

<표 8>를 보면, 연구대상자 소득 계층별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전체의 평균이 3.60로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 인식하고 있으며, 소득 계층별은 5천만원~1억원미만 3.73, 3천만원미만 3.62, 1억원이상 3.61, 3천만원~5천만원미만 3.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자 집단 모두 현재의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제도가 조세부담능력보다 적게 납부할 허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8>를 보면, 연구대상자 소득 계층별로 집단 간 현재의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제도는 고소득자의 경우 조세부담능력보다 적게 납부할 허점이 있는가에 대한 인식정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3-2의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제도는 고소득자의 조세부담능력보다 적게 납부할 허점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집단 소득 계층별로 인식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를 지지하므로 소득 계층별로 인식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검증결과에 따라 가설 3-2는 기각된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소득 계층별 집단 모두 현재의 4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제도는 고소득자의 경우 조세부담능력보다 적게 납부할 허점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행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 론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의해 실지명의로 금융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1994년 종합과세의 원활한 시행 및 사전 행정 준비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제정하였다. 1996년부터 부부합산 4천만원 이상을 종합과세하도록 개정하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 귀속분부터 무기한 유보한 후 2001년부터 소득, 계층 간 세부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실시 되었다. 이후, 2002년 8월 29일 부부합산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전환되어 시행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공평과세를 통하여 조세정의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지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기준초과금액에 한정하여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였다. 이는 금융소득을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준금액 이하를 각각 다르게 과세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약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같이 기준금액에 의한 금융소득의 과세제도가 담세력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보다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가에 대한 공정성을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리과세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세무전문가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인 분리과세제도에 대하여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전체의 68.12%가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으로 현행의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의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연구대상자인 세무전문가들의 직업별, 소득 계층별 집단 간에 현재의 분리과세제도에 대해 모두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인 세무전문가들의 직업별 집단 간에 현행의 분리과세제도에 대해서 회사 임원 및 사원과 기타 집단이 공인회계사, 세무사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회사 임원 및 사원과 기타 집단이 공인회계사, 세무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가설 1-1은 기각한다. 소득 계층별 집단 간에는 현행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공정성에 대하여 각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1-2는 지지된다. 이 같은 결과는 현행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인 분리과세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분리과세제도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현행의 분리과세제도에 비해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전문가 집단의 인식정도는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이 64.22%로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구대상자인 세무전문가들의 직업별 집단 간에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임원 및 사원 집단의 “그렇지않다”를 제외하고, 모두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 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임원 및 사원과 공인회계사 집단,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집단, 세무사와 기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가설 2-1은 기각된다. 소득 계층별 집단 간에는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3천만원~5천만원미만 집단 “그렇지않다”를 제외하고, 모두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 인식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2-2는 지지된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집단과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현행의 분리과세제도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현행의 분리과세제도는 고소득자의 경우 조세부담능력보다 적게 납부할 허점이 있는 과세제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전문가 집단의 인식정도는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이 83.31%로 현행의 분리과세제도는 고소득자의 경우 조세부담능력보다 적게 납부할 허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구대상자인 세무전문가들의 직업별 집단 간에 현행의 분리과세제도는 고소득자의 경우 조세부담능력보다 적게 납부할 허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모두 “어느정도 그렇다” 이상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 집단과 세무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가설 3-1은 기각된다. 즉, 세무사 집단이 공인회계사 집단에 비해 4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제도는 고소득자의 경우 그들의 조세부담능력 보다 덜 납부할 허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 계층별 집단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3-2는 지지된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직업별, 소득 계층별 모두 현행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의 과세의 공평성에 대하여 세무전문가 집단으로 한정하여 표본을 선정하므로 인하여 자료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 등 표본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설문조사 및 자료수집상의 한계점이 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질적 특성을 갖는 항목들에 대하여도 연구대상자들의 인식을 단순히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계량화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측정상 편의(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없는 관계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충분히 비교하기가 곤란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제도에 대한 세무전문가들 간의 인식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무전문가 집단과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집단과의 인식차이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과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하여 세무전문가 그룹이 인식하는 현황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철수, 2001, “최저한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이익조정 및 수평적 공정성에 대한 실증분석”,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예기 · 이영환, 2003, 「조세론」 : 88
- 박춘래 · 김종원, 2003,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기간별 공정성 분석”, 회계저널 제12권 1호 : 115-152
- 변용환, 1991, “조세정의에 대한 지배적 인식기준”, 경영학연구 제21권 제1호 : 37-79
- 안중석, 2005, “개인소득세제 개혁 : OECD 회원국의 동향과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소 「연구보고서」, 2005년 10월호 : 24-49
- 이계원, 2001, “조세공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무학연구 제18호 : 7-33
- 이만우, 1993, “기업관련세제의 개편방향”, 한국세무학회 발표논문 : 89-119
- 이우택, 1995, “조세행정의 적정절차와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연구보고서」 제11호 : 101-102
- 임용주 · 김정완, 1996, “세율단계수의 변화가 소득계층별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43집 제4호 : 77-94
- 조한석, 1998, “사업소득의 과세공평성에 관한 실증분석”, 산업경제연구 제11권 제4호 : 277-293
- 현진권 · 나성린, 1994, “우리나라 세제의 형평성 측정 :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세부담 차이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41권 제3호 : 147-180
- Anderson, K. E., T. J. Hill, Jr., and D. P. Murphy. 1995. Horizontal Equity and Implicit Tax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7 : 89-100
- Grasso, L. P. and P. J. Frischmann, 1992, Measuring Horizontal Equity : A Regression Approach,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7 : 123-133
- Setharaman, A., and G. S. Iyer. 1995. A Comparison of Alternative Measures of Tax Progressivity : The Case of the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Spring) : 42-70

A Study on Tax Specialists' Recognition in connection with the Impartiality of Financial Income Tax System

Seongu Kim* · Sungbae Park**

— <Abstract> —

There are different views whether the separate taxation system for income below the standard amount, along with the progressive tax rate system, where the group with higher income than the rest pay more tax, can be seen as the systems that consider the horizontal impartiality, which draws rational distinction in the consideration of different environments. Therefore, the separate taxation system can be utilized as a proper way to elude taxation for the groups with higher income, and its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for encouraging disparity of income inevitably and for lowering the redistribution function of income.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tax specialists in understanding on whether the separate tax system for the income tax below the standard amount corresponds to the horizontal impartiality of taxation. By applying the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study, analysis of variance(ANOVA) by F investigation, Duncan's multi-scope verification as a post investigation on the F investigation, that were conducted using the data from a survey of tax specialists, the level of understanding on the impartiality of separate taxation of income has been analyzed.

The summary of results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result found the separate taxation system for income from interests or dividends below 40 million won in the aspect of paying tax unfair. The result of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with different occupations supports the hypothesis statistically.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with different levels of income. Second, the result showed the positive recognition to impose tax on the income from interests or dividends below 40 million won by adding up together with the total income. In verifying the difference of understanding among the group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with different occupations, which supports the hypothesi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with different levels of income. Third, a blind point has been found that a person with higher income, in the case of separate taxation system on the income from interests or dividends below 40 million won, could in fact, pay lower tax than the possible share. In verifying the difference of understanding among the groups, there was

* Professor in both Kyungwon University an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Business Accounting Department in Kyungwon University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with different occupations, which supports the hypothesi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with different levels of income. The results show that the people who took the survey for this study supports the idea that the separate taxation system on income below standard obstructs the impartiality of taxation and also the necessity to make revision on the taxation system to impose tax after adding up to total income.

It appears this study holds its significance, first, for presenting the necessity to improve on the impartiality of taxa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attaining fair taxation and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redistribution, and second, for showing the high possibility of the dissatisfaction toward the unfair taxation system becoming the cause of resistance or elusion to pay tax.

<Key words> Income Taxation System, Impartiality on taxation, Separate Taxation, Income Tax Rate System, Income from Interest · Dividends